

《質》 《問》 《解》 《答》



<相談役 李在賢 副會長>

- ◎..... 齒協은 醫療保險을 實施함에 있어 醫療保險者를 診療.....◎
- ◎.....하면서 疑問點에 대한 質問을 歡迎하며 相談役인 李在賢.....◎
- ◎.....副會長께서 誌上을 통해 誠意있는 答辯을 해드리고 있음.....◎
- ◎.....니다. 많은 質問을 바랍니다.◎

1) 某齒科療養取扱機關에서 654 | 456 의 2/3顎에 對해서 齒石除去를 한 후에 51×6=306點을 請求하였는데 正當한 請求인지요? (S. 醫療保險組合)

答: 환자기록부를 자세히 보기 전에는 내용 파악하기가 곤란한데 우선 상기의 기록만으로는 654 | 456 만이 잔존치로 남아있어 나머지는 국소의치로 장착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혹시 전악을 다 치석제거를 한 후에 기록을 누락시켰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654 | 456 치석 제거를 했을 경우는 51×2=102점 밖에는 정구가 안되며 204점은 과잉청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만약 654 | 456 이외의 치아도 다 치석제거를 하였으나 기록을 누락시켰다면 정정기록한 후 조합에 재청구하면 되겠습니다.

2) 某齒科療養取扱機關에서 取扱한 齒周患者에 대해서 전면 一律的으로 齒石除去를 한 후에 모든患者에 對해서 齒周搔爬의 複雜한 例로 해서 모든 症例에 對해서 213×6=1278點을 請求하였는데 過剩請求가 아닌지요? (T 醫療保險組合)

答: 일반환자에 있어서는 치주치치시에 다소 염증이 경미한 부위에 있다 하더라도 전악을 대상으로 치치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치치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치석제거후 어느 부위는 치주낭이 얇으므로 齒周搔爬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위는 치은증식이 심하므로 말미암아 齒齦切除手術을 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위는 골내낭이 형성되었거나 또는 치조골의 병변이 있을 때는 齒齦剝離手術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집

도한 치과의사의 특기에 따라서 齒周搔爬手術을 시행하여 치주낭의 제거나 치주조직의 염증을 제거할 수도 있으나 보험환자에 있어서 특정요양기관에서 취급된 모든 치주환자에 대해서 전면일률적으로 치석제거후 모든 환자에 있어서 齒周搔爬를 실시하였다면 과잉진료를 했다고 주장하는 의료보험조합의 항의에 대해서 반증하기가 곤란하다고 본다.

그런고로 보험환자에게는 정확한 진단은 물론 선택적으로 치료방법을 택할 것이며 때로는 전악을 대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가능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부위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上顎第三大白齒를 拔齒하다 破折되어 치은박리에 의해서 結果的으로 難拔齒手術을 하였으며 難拔齒로서 200點을 請求하였으나 醫療保險組合으로 부터 X선사진이 첨부가 안되어 있어 難拔齒로 認定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如何히 處理하였으면 좋겠습니까? (K齒科醫院)

答: 難拔齒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X선사진을 촬영해서 難拔齒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토록 하는 것이 좋으며 더군다나 難拔齒時에는 X선사진의 판독에 의해서 치근의 방향이나 치조골의 상태 등 진단을 위해서도 X선사진의 촬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상악제 3대구치가 처음에 쉽게 발거될것 같아서 발치를 시도하였으나 파절되었을 경우는 파절 즉시 X선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잔근 발치하는데 진단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나중에 진료비 청구하는데도 난발치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